별첨#-4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2026. 11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2026. 6.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 1

제 1 절 목 적 ····· 1

제 2 절 과업의 개요 ····· 1

제 3 절 작성요령 ····· 1

제 4 절 제출안내 ····· 2

제 5 절 기타사항 ····· 2

제2장 작성지침 ····· 3

제 1 절 일반사항 ····· 7

제 2 절 유사용역 수행실적 ····· 9

제 3 절 신용도 ····· 11

[서 식]

양식 #1(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5

양식 #2(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 13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1 절 목 적

본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안전점검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관련사항을 기술하였으며, 본 지침에 따라 자기평가서·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2 절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내용 : 고리원자력 분기관로 이중화 공사 정기안전점검
나.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 ~ 준공일 이후 3개월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 국토안전관리원)

제 3 절 작 성 요 령

가. 작성요령 : 제 2 장 참조
나. 규격 및 제본
1) 규 격 : A4(10절)
2) 표 지 : 양식 #1 참조
3) 지 질 : ◦표 지 - 백색 아트지 (180g/전지)
◦내용물 - 백상지
◦간 지 - 색지
4) 제 본 : 양면 좌철 (무사무선철)
5) 글 씨 체 : 일반적인 명조 또는 고딕체
※ 칼라프린트, 색도인쇄 등을 금지할 것

제 4 절 제 출 안 내

가. 제출기한 및 부수

1) 제출기한 : 별도 공고내용 참조

2) 제출부수 : 1부(자기평가서 포함), 이동식 저장매체(USB) 1매

나. 제출장소 : 별도 공고내용 참조

다. 참가자격 : 별도 공고내용 참조

제 5 절 기 타 사 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접수처 도착시간 기준)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기재된 내용 중 잘못된 사항이나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또는 평가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나 본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는 우리공사에서 임의 처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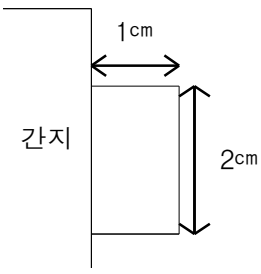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지침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공사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각각의 평가항목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지에 소제목을 표기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라.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각 작성항목의 작성기준 시점은 따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해당용역 공고일로 한다.

바.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금액란에 기입하는 **금액은 백만원 이하에서 반올림**하여 기입한다.

사. **제출증빙서류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 및 참여사의 유사용역 실적의 각 항목에 대하여 간지에 옆의 그림과 같이 색인을 부착하여야 한다.



※ 표기문구는 참여기술인은 홍길동(경력), 홍길동(실적)으로 표기한다.

제 2 장 작 성 지 침

(양식#1)

원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고리원자력 분기관로 이중화 공사 안전점검 기관 지정공고)

2026. 11.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필수 기재(담당자를 통해서만 연락)*

점 검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남부사업단장
참조
제목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울산권지사 고리원자력 분기관로 이중화 공사 정기안전점검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2. 실적증명서 1부.
　　3. 경영상태 평가(등급) 자료 1부.　끝.

[점검기관명] 대표자 (인)

- 목 차 -

제 1 절 일 반 사 항

1. 일반현황.....( )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현황.....( )

제 2 절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최근 5년 내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 )

제 3 절 신 용 도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 )

제 1 절 일 반 사 항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사업자 등록번호	

(주) 회사이력,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현황

등록번호			등 록 일	
등록분야		토 목		건 축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기술인력	가목			
	나목			
	다목			

(주) 1. 등록번호 : 지정공고된 해당분야(또는 종합분야) 등록번호
2. 등 록 일 : 지정공고된 해당분야(또는 종합분야) 등록일
3. 등록분야 : 해당분야에 '○' 표기
4. 기술인력 : 해당 기술인 명단 기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1 참고)
5.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첨부
6. 종합분야는 모두 표기

제 2 절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

일반사항	업체명		
실적 요약	최근 5년간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 수	건
		금 액	백만원

유 사 용 역 실 적 사 항											
분야	년도	용역명	용역 개요	용역 기간	준공 금액 (백만원)	도급 비율 (%)	인정 비율 (%)	실적 건수	실적 금액 (백만원)	발주자	비 고 (증빙서류 page)
정기				00.00.00 ~00.00.00	000	00%		0.0	000		
정기											
정밀											
초기											
초기											
공사 재개전											
총계					000				000		

(주)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 해당분야의 준공된 실적에 한하며, 연차 준공된 용역은 최종차수 준공시 1건으로 인정함

2. 준공일자 순으로 기재하되, 유사용역의 점검범위 및 증빙서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른다.

3. 건수는 용역단위로 산정(구조물 단위 아님)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준공금액란에 전체 계약금액을 기재하고 발주자의 공동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증빙서류에 해당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첨부생략 가능)

5.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은 도급비율(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1) 인정비율(%) : 과업으로 인정하는 분야는 및 인정비율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에 따른다.

   2) 실적건수 : 1건×도급비율(%)×인정비율

   3) 실적금액 : 준공금액×도급비율(%)×인정비율

제 3 절 신 용 도

1. 신용평가등급

회사명	평가받을 항목	신용평가등급	비 고 (증빙서류 page)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중 택1)		

(주) 1.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단,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에 한함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양식#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고리원자력 분기관로 이중화 공사 안전점검 기관 지정공고)

2026. 10.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필수 기재(담당자를 통해서만 연락)*

안전점검기관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평 가 항 목		배 점	자기평가점수	발주청평가
총 계		**20**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10		
	최근 5년 내 유사용역 이행실적	10		
신용도	계	10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	10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 업체명

수행년도	용역실적(건수)				용역금액 (백만원)
	정기안전 점검(A)	정밀안전 점검(B)	초기점검(C)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D)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A + B + C + D = ( )건				

※ 배점표

구분	심사항목	심사방법	배점 한도	등 급	평가 점수
Ⅰ. 당해 용역 수행 능력	최근5년내 유사용역 이행실적(인정범위 및 가중치는 사업주관부서의장이 정함)	$\frac{\text{용역실적금액}}{\text{예정용역비}\times 2}$	10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E. 0%초과 - 10%미만 ※ 해당실적이 없으면 0점 처리	10 8 6 4 2

다. 신용도

1)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10점)

용역사	신용평가 등급	등급점수

※ 배점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하여 지정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